물류관리사 단기완성 법규 2022년 재판 추가 정오표

(2022년 1월 10일 발행)_2022.6.29

p55. 28번 ③ 일부 내용 추가

수정 전	수정 후
③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진다.	③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진다.

p119. 35번 해설 ⑤의 내용 전체 교체

수정 전	수정 후
⑤ 2년 ➡1년	⑤ 임대하려는 토지·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(시행령 제40조) :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때의 임대요율은 100분의 3을 말한다. 다만,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.